

## “All Star-” 를 둘러싼 상표분쟁

Reebok사는 스포츠용 신발(sneaker)을 제조하는 라이벌  
Converse사와 “All Star” 를 둘러싼 상표분쟁에서 승리함.

**미** 국의 유명 신발 회사인 Converse사 (Massachusetts Andover 소재)<sup>1)</sup>는 자사의 유명한 “Chuck Taylor All-Star sneakers” (스포츠용 신발)라는 상표를 Reebok이 침해했다고 하여 3년전에 동 회사를 고소했다.

Converse사는 소비자들이 “All Star” 로고가 너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Reebok의 신발을 Converse신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회사는 Reebok(Canton소재)이 자사

가 지난 85년 이상 형성해 놓은 명성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Reebok사는 자사의 All-Star sneakers는 N-B-A All-Star game과 연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Reginal Lindsay판사)는 Reebok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주에 Converse사는 Reebok이 “All-Star”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 Converse사는 수십년동안 농구신발을 만들어온 회사로서, 2001년 파산하여 2003년 Beaverton에 있는 Nike사에 3억5백만 달러에 인수됨.

## Google社와 Yahoo社, 검색특허에 대한 분쟁 해결

구글社は 라이벌 인터넷 검색 엔진 사이트인 야후社가 제기한 온라인 광고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분쟁이 해결되었음을 발표. 이로써 구글社가 기업공개(IPO) 전에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함.

**야** 후사는 2003년에 오버츄서비스社 (Overture Service Inc. Pasadena 소재)를 인수한 후에 동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오버츄社

는 광고주들이 (검색) 주제어에 대한 입찰을 하는데 사용되는 광고 기술에 대한 특허시스템을 구글사가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도에 특

## 퀄컴사, 위치확인기술(GPS)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판결받음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미국의 졸타사(Zoltar Satellite Alarm Systems)가 퀄컴사(Qualcomm)를 상대로 제기한 핸드폰에 장착된 위치확인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퀄컴사의 손을 들어줌.

**퀄**컴사의 위치확인기술인 GPSOne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5천만 핸드폰에 장착되어 활용되고 있다. 동 기술은 핸드폰 사용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전화번호를 누르면, 핸드폰 사용자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기술이다.

퀄컴사는 CDMA 방식의 무선기술과 관련한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동 기술에 대해 졸타사(Zoltar Satellite Alarm

Systems)는 퀄컴사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에 열린 배심원 판결에서 쟁점으로 된 7개의 특허청구범위중 6개가 만장일치로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나머지 하나의 특허청구 범위에 대해서도 퀄컴사는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퀄컴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검색 엔진 결과 옆에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광고수입을 올리는 구글사의 주요 소득원을 위협하는 것이다.

동사의 수입 중 거의 98%가 검색 관련 광고로부터 나오며, 광고 시장 규모는 2003년 19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55억달러까지 커질 것이라고 한다.

종전까지 양사는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에서 긴밀한 동업자 관계로 구글사는 수년 동안 야후사의 웹사이트에 검색 결과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야후사의 경영진이 수백만 달러가 구글사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체 검색 엔진을 구축한 오버츄와 Inktomi Corp를 올 2월에 20억 달러 이상을 주고 인수한 후 구글사와 결별

하였다.

이번 분쟁해결로 구글사는 2001년도에 오버츄사가 획득한 특허기술에 대해 영구적으로 라이선스를 얻게 되었으며, 야후사는 소송을 취하하고, 구글사는 동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반소를 포기하였다.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구글사는 자사 주식 중 270만주를 야후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구글사의 추정치로 약 3억 6천 5백만 달러에 해당한다.

이번 분쟁해결은 구글사의 기업공개(IPO : Initial Public Offering)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제어 광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사의 권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취한 법적 대응 전략 중의 하나라고 한다.

제공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법률2004/9